

치유�휴직 신청서

※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“√” 표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
신 청 근로자	성명	생년월일
	주소 및 연락처 (전화번호:) (휴대전화:)	
치유�휴직	치유�휴직 신청기간 ~	
	* (치유�휴직 개시 예정일:) * (근무 복귀 희망일:)	

「10·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」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치유�휴직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사 업 주 귀 하

첨부서류	※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함	수수료 없 음
	[] 피해자 인정 결정서 사본	
	[] 기타 ()	

유의사항

- 1. 치유�휴직은 「10·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2026년 5월 11일부터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1년 이내에 10·29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·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2. 치유�휴직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, 「10·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」 제60조제2항 단서에 따라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의 치유�휴직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3. 법률 제21334호 10·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을 부칙 제2조에 따라 2026년 5월 11일 전에 치유�휴직을 신청하여 허용 받은 근로자도 「10·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」 제6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치유�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의 치유�휴직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4. 치유�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치유�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 확인서

- 본인은 「10·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피해자로서 치유�휴직을 신청하기 위하여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- 본인은 사업주가 본인의 치유툅직을 허용하고 고용유지비용을 신청하기 위하여 이 신청서를 증명자료로 활용하는 데에 동의합니다.
- 본인은 성명 및 생년월일의 수집·이용과 관련하여 제2호에 따라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서를 접수하여 처리하는 행정기관이 향후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서의 처리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 이용한다는 설명을 들었으며, 정상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본인의 위 개인정보가 활용되는 것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.
- 본인은 사업주의 고용유지비용 수령과 관련하여 해당 행정기관으로부터 본인의 치유툅직 실시 등의 사실관계 확인 및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의 부정행위 여부 확인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등에 대한 협조 요청을 받는 경우 적극 협조할 것임을 확인합니다.
- 신청인은 위 내용을 이해하고 이 신청서를 제출함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